

#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123
----------	-----

제출일자 : 2008. 10. 8  
제 출 자 : 사하구청장

## 1. 제안사유

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효율적인 조직 운영을 위하여 도시경관과 관련 있는 총무국 소관 광고물 관리업무를 도시국으로 이관함에 따라 그와 관련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함.

## 2. 주요골자

- 총무국의 분장 사무 중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삭제(안 제5조제2항제14호)
- 도시국 분장 사무에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(안 제7조제2항제17호)

## 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112조 등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 제13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- 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- 라. 입법예고 : 2008. 9. 17 ~ 2008. 9. 23(7일간) ▷ 제출된 의견 없음

부산광역시 사하구 조례 제 호

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제120조까지의 규정과”를 “제120조까지와”로 “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”를 “제13조에 따라”로 한다.

제5조제2항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- 14. 영화 및 비디오·음악산업·게임산업에 관한 사항

제7조제2항제1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17. 광고물관리에 관한 사항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